

1. 개정 이유

법령상 원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법령 정비를 통해 행정 및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본을 보관 또는 비치하는 경우 전자적 형태의 보관·비치도 가능함을 명확화(안 제1조, 제3조,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원본을 보관하거나 비치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전자적 형태의 보관·비치도 가능하도록 명확화 함

나. 원본과 대조하거나 원본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전자화문서를 통한 대조·확인도 가능하도록 명시(안 제2조, 제11조)

원본과 대조하거나 원본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종이문서 확인 없이 보관 중인 전자화문서로 대조 또는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명시함

다.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하는 경우 모바일신분증 제시도 가능함을 명확화(안 제4조, 제10조)

법령에서 직접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제시 대상인 신분증 원본의 개념에 모바일신분증도 포함됨을 명확화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법령별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8. 5. ~ 9.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대한 부령안

제1조(「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의 개정)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보존하여야 한다”를 “보존하되, 전자적 형태로 보존할 수 있다”로 한다.

제2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정서 원본. 다만, 지정서 원본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화된 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문서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제130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검정기관 지정서 원본. 다만, 지정서 원본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화된 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문서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의4제4항제1호 중 “원본자료”를 “원본자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화된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험결과의 원본자료 및 인증시험대장은 전자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제67조의4제5항 중 “원본자료”를 “원본자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화된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사본(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을 “사본[신분증 원본(모바일 신분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으로 한다.

제5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7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심사 원본 자료 및 인증심사대장은 전자적 형태로 보관·비치할 수 있다.

제6조(「물품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물품규격서 원본 및 부속서류는 전자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제7조(「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원본 자료”를 “원본 자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화된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심사 결과의 원본 자료와 인증심사대장은 전자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제8조(「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4제3항제1호 중 “원본자료”를 “원본자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화된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험결과의 원본자료와 인증시험대장은 전자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제9조(「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의 개정)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두어야 한다”를 “두되, 전자적 형태로 갖추둘 수 있다”로 한다.

5. 신청서 각하(却下) 원본철. 이 경우 신청서 각하 원본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갖추 둘 수 있다.

제10조(「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사본(신분증 원본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사본[신분증 원본(모바일 신분증을 포함한다)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으로 한다.

제11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나목 중 “농지원부원본”을 “농지대장 등본”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시험성적서의 발급 등) ① (생략) ② 원장은 제1항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합격증 원본을 5년간 <u>보존하여야 한다.</u>	제5조(시험성적서의 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보존하되, 전자적 형태로 보존 할 수 있다.</u>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① ----- ----- ----- ----- ----- ----- ----- -----.
1. 지정서 원본	1. 지정서 원본. 다만, 지정서 원본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화된 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문서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0조의2(검정기관 지정의 갱신 절차 등) ① 법 제99조제5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제130조의2(검정기관 지정의 갱신 절차 등) ① ----- ----- -----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75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검정기관 지정서 원본

2. (생략)

②·③ (생략)

-----.

1. 검정기관 지정서 원본. 다만, 지정서 원본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화된 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문서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7조의4(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① ~ ③ (생략)	제67조의4(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인증시험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 -----.
1. 시험결과의 <u>원본자료</u> 와 일치하도록 인증시험대장을 작성할 것	1. ----- <u>원본자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화된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u> -----
2. 시험결과의 원본자료와 인증시험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할 것 <후단 신설>	2. ----- ----- --. <u>이 경우 시험결과의 원본자료 및 인증시험대장은 전자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⑤ 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하여 매 반기마다 시험결과의 <u>원본자료</u> , 인증시험대장,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관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 ----- ----- <u>원본자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화된 문서를 보</u>

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
화문서를 포함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	제2조(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
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① -----
(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
5제1항에 따라 문화이용권을 발	-----
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
서식의 문화이용권 신규발급 신	-----
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
를 첨부하여 「문화예술진흥	-----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	-----
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의 위원장(이하 “한국문화예술	-----
위원회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	-----
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	-----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	-----
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	-----
야 한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받	-----.
는 자가 법 제15조의4제2항 및	-----
제3항에 따라 제1호의 서류를	-----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1. (생략) 2.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3.·4. (생략) ② (생략)	----- ----- -----. 1. (현행과 같음) 2. ----- ----- <u>사본[신분증 원본(모바일 신분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u> 3.·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의7(인증기관의 조직 및 운영) ① ~ ④ (생략) 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심사원본 자료와 함께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후단 신설>	제13조의7(인증기관의 조직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u>이 경우 심사 원본 자료 및 인증심사대장은 전자적 형태로 보관·비치할 수 있다.</u>
⑥·⑦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물품규격서의 기록 및 보관)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규격 관리대장에 물품규격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해당 물품규격서 원본을 부속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3조(물품규격서의 기록 및 보관) ----- ----- ----- ----- ----- ----- ----- ----- -----, 이 경우 물품규격서 원본 및 부속서류는 전자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인증심사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운영 등) ①·② (생략) ③ 심사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심사 결과의 <u>원본 자료</u> 와 일치하도록 인증심사대장을 작성·비치할 것 2. 심사 결과의 원본 자료와 인증심사대장을 3년간 보관할 것 <u><후단 신설></u> 3. (생략) ④ ~ ⑥ (생략)	제5조(인증심사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u>원본 자료</u>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화된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2. ----- ----- --. <u>이 경우 심사 결과의 원본 자료와 인증심사대장은 전자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u> 3.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의4(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①·② (생략)	제34조의4(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 -----.
1. 시험결과의 <u>원본자료</u> 와 일치 하도록 인증시험대장을 작성 할 것	1. ----- 원본자료(「전자문 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 조제2항에 따라 전자화된 문 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u>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u>)-- -----
2. 시험결과의 원본자료와 인증 시험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할 것 <u><후단 신설></u>	2. ----- ----- --. <u>이 경우 시험결과의 원본 자료와 인증시험대장은 전자 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철 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 부와 함께 갖추 <u>두어야 한다</u> .	제1조(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두되, 전자적 형 태로 갖추둘 수 있다</u>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u>농지원부원</u> <u>본과 자경증명의 확인</u> ③ ~ ⑦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 ----- <u>농지대장 등</u> <u>본</u> ----- ③ ~ ⑦ (현행과 같음)
--	--